

「技術開發 투자촉진에 관한 法律案」



지난 5월 10일 「기술
개발투자촉진에 관한 심
포지움」이 전경련회관에
서 개최됐다. 다음은 주
요내용의 요지이다.

- 立案背景 -

金容灝

〈科學技術處次官〉

◇ 技術革新을 위한 정책 노력

政府에서는 지난해 부터 每分期마다 技術振興
擴大會議를 개최하고 科學技術振興施策을 마련
하는 등 技術革新에 온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

大統領閣下께서는 새해 國政演說을 통해 聰國
의 技術開發體制의 구축과 技術主導政策의 전개
를 선언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技術開發支援을
위한 稅制, 金融 및 政府購買制度改善과 研究要
員兵役特例등 각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위하여
많은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產業界에서도 技術開發을 위한
분위기와 태세가 눈에띄게活性化 되고 있다. 企業
研究所는 계속 늘어나고 產業技術研究組合도
활발히 결성되고 있다.

企業家들도 지난날 각종 産業保護施策을 바탕
으로 部品導入・組立生産物量確保만 하면 市場
이 확보되던 안이한 시대가 지나 가버렸음을 깊
이 깨닫고 있다.

이제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한 製品高級化와
原價節減없이는 경쟁할 수도 없고, 技術開發에
의한 Know-How와 Know-why의 축적없이는 輸
出伸張 企業成長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消費者인 一般國民들도 國產이라는 명분때문
에 低質製品을 더이상 강요 당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고, 조잡한 國產製品의 맹목적 애용이 오히려
國內技術開發을沮害한다는 사실도 의식하기

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技術革新을 위한 政府의 政策意志
와 제도의 개선, 產業界의 分위기와 企業家의
자각, 國民的关心과 認識提高等 諸般側面에서
기술개발의 分위기가 外見上 高潮 되어가고 있
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技術開發과 技術革新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절박한 基本命題에 대해 政
府, 企業 그리고 各界各層에 걸쳐 폭넓은 인식
과 합의가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가고 있
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省察해 보면 그
렇게 樂觀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기술혁신의 절박성에 대한 “말의 盛饌”이 요란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技術開發을 위한
능력과 수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對內
의 與件과 態勢는 말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인 것 같다.

◇ 우리의 技術水準

먼저 오늘의 우리의 技術水準을 잠깐 살펴 보
기로 하자.

科學技術開發能力과 수준의 측정을 위한 方法
論上の 定說은 없지만, 제품의 性能面에서 본
기술水準을 대표적인 예로 보면, 精密度面에서
先進國이 $\frac{1}{1,000}$ mm임에 비해 우리나라가 $\frac{50}{1,000}$
mm으로서 $\frac{1}{17}$ 水準에 불과하고 耐久度, 正確
度, 均一性, 粗度등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落後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技術開發을 위한 현실적 노력과 여건이 집약되어 표현되는 投資規模面과 技術人力確保面을 보면 相對的 指標로나 絶對的 規模로나 대단히 빈약함을 알 수 있다.

흔히 巨視的 指標로 사용되는 GNP對比 技術開發投資와 微視的 指標인 賣出額對比 技術開發費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각각 0.79%와 0.54%로서 先進諸國의 2%~3%線 수준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絶對額規模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政府와 民間을 종합한 全部門의 研究開發費는 4.3억 \$ (1981년도 基準)로서 이것은 美國의 $\frac{1}{100}$, 日本의 $\frac{1}{34}$, 西獨의 $\frac{2}{35}$ 에 불과하고, 日本의 어느 한個人企業의 한해 研究開發費 5.1억 \$보다 오히려 적은 額數이다.

한편 研究人力面에 있어서도 人口萬名當 4.5명 (1981년 基準)으로서 進先諸國의 13명~28名線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研究人力數 20,700명은 美國의 $\frac{1}{2}$, 日本의 $\frac{1}{6}$, 西獨의 $\frac{1}{3}$ 水準이다. 이리 한 研究人力의 量的 不足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質的水準의 貧弱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科學技術立國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고, 技術革新을 주축으로 해서 進先圈으로의 進入을 함께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技術開發 투자와 技術人力의 빈약이라는 기본적 제약요인을 극복,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한갓 口號에 그치고 말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이야 말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와 根源의 仁對策의 마련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時點에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制定推進하고자 하는 本 「技術開發投資促進에 관한 法律案」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基本趣旨가 있는 것이다.

◇ 法案의 内容

이제 背景說明에 이어 本 法案의 内容에 對해

서 要約해서 說明을 하고자 한다.

먼저 本 法案을 立案함에 있어 그 바탕에 荷고 있는 原則과 前提를 要約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기술개발을 위한 政府役割의 중요성과 그동안 표방해온 技術優位政策의 의지에 따라 國家財政이 허용하는 한 技術開發投資를 위하여 최대로 지원한다.

둘째, 政府投資機關은 公共部¹⁾으로서의 선도적 입장에서 技術開發投資의 모범을 보이고 關聯技術開發의 결과는 가능한 한 民間에 移轉·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세째, 民間企業의 技術開發投資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誘引措置를 보장해 줌으로써 자율적인 投資環境과 여건을 조성해서 투자확대를 유인한다.

네째, 투자의 확대는 需要에 맞추어 年次의 으로 증가시켜 나가되 需要刺戟을 위한 綜合的 施策을 併行推進하고, 아울러 技術開發投資의 効率性提高에 최대의 역점을 둔다.

다섯째, 民間に 의한 기술개발체제의 창의성을 감안하여 民間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民間に 맡기고, 民間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분야만을 政府에서 수행하되 궁극적으로 政府는 技術人力養成·基礎研究育成·公共福祉技術開發 등으로 그 기능을 국한시켜 나간다.

◇ 法案의 主要骨子

이러한 原則下에 成案한 法案의 主要骨子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本法律案에는 主要投資主體를 3개부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政府投資機關部門의 技術開發이다. 韓電, 電氣通信公社等 政府投資機關은 每年 그 收入金의 一定率(3%)範圍內에서 별도의 技術開發計定을 설정하고 그 設定金額을 當該事業 또는 關聯事業의 技術開發을 위해 투자도록 하였다.

예전에 韓電의 경우 電力技術開發計定을 설정해서, 原子力發電 및 安全性確保技術등 에너지 關聯技術開發에 투자도록 하고, 電氣通信公社의

경우는 電氣通信技術開發計定을 설정하여 通信 시스템技術, 通信裝備開發等 電氣通信關聯 技術開發에 투자도록 한다.

韓電의 경우, 每年 收入金의 0.5%를 투자한다고 하면 5년간에 걸쳐 約 800억이 될 것이고, 1%면 1,600억원이 된다. 電氣通信公社의 경우 收入金의 1%를 투자한다면 約 600억원이 될 것이며, 2%일 경우에는 1,200억원이 된다. 韓電에서 10년前 原子力發電所 建設에 착공하였고 현재 2基가稼動中에 있으며 앞으로 10年内에 9基의 原子力發電所가稼動하게 된다. 原子力發電所 1基建設에 1조억원이 투자되는데, 우리의 技術水準은 겨우 土木建設部門程度가 自主的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技術이 自立되면 投資費의 상당부분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만약 10%로假定하면 1基에 1,000억원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技術開發 技術自立이 중요한 가를 실감케 한다.

둘째는 民間企業의 技術開發이다.

鑛工業, 建設業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게 될 事業을 營爲하는 民間企業은 每年 그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의 一定率(所得의 경우 3% 또는 收入金의 경우 0.2%)의 범위안에서 技術開發計定을 設定하고 技術開發을 위해 投資토록誘導하게 된다. 이 法에 의해서 企業이 技術開發을 하면, 그 投資額은 全額 損費認定을 받고 또 投資金額의 30%에 해당하는 金額은 稅額控除惠擇을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法에 의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租稅惠擇에 의해서 투자케 된다. 이 企業技術開發計定의 用途는 該當企業이 당면하고 있는 生產現場技術의 개량을 통해 生產性 및 品質을 向上하거나 新製品 및 新工程을 開發하는데 사용토록하는 한편 他企業의 技術開發이나 研究機關 또는 政府技術開發計定에 투자 또는 出捐할 수 있도록 勸獎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技術開發需要는 절실하나 資金이 없는 企業이나 大學 또는 研究所等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技術開發資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社會全體의으로 技術開發投資가 穩성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法에 의해서 向後 5년間 民間企業에서 조성되어질 企業의 技術開發計定金額의 규모는 平均概念으로 1,800億원으로 推計되지만 최고 3,600억원까지도 기대될 수 있다.

세째는 政府에 의한 技術開發計定이라고 할 수 있는 「技術開發特別基金」의 設定 運用이다. 그 造成財源은 政府財政을 주로 하되 上記한 바, 政府投資機關의 技術開發計定으로 부터의 一定率範圍內에서의 出捐金, 企業技術開發計定으로 부터의 一定率限度內에서의 納入金等으로 조성 켜 되어있다. 이 特別基金의 규모는 5년間에 걸쳐 約 3,500억원 정도로 목표하고 있다. 그 주된 用途는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특별히 中요한 技術開發分野에 쓰여질 것이다. 예컨대 產業尖端技術과 生產現場技術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核心據點技術開發, 中小企業 共通隘路技術解決, 技術人力養成 확보, 目的基礎研究 그리고 公共福祉技術開發등이 될 것이다. 가령 計定金額中에서 약 1/4인 1,000억원을 基礎研究에 투입한다면 1,000개의 大學研究室에 년간 2천만원의 純粹研究費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大學院教育이 研究開發中心으로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技術蓄積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計定金額中 약 ¼인 1,000억원을 人材養成에 투입한다면 5년간에 5,000명의 最高級人力이 양성될 수 있다.

물론 이 特別基金은 수요와 필요(Demand and Needs)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하고, 특히 中·長期 Master Plan에 따라 一貫性과 持續性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 지원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技術革新의 起爆劑役割을 수행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本法律案은 政府, 政府投資機關 및 民間企業에 의한 技術開發投資의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의 방향을 올바로 유도하고 그 效率을 극대화하기 위해 「技術開發投資調整審議會」를 설치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審議會는 政府·產業界 科學技術界 그리고 金融界등各界代表와 專門家로 구성된다.